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

발의연월일: 2020. 9. 3.

발 의 자: 강득구・박 정・양이원영

이소영 · 김영배 · 오영환

신정훈 • 이용빈 • 윤준병

윤재갑 · 김정호 · 양정숙

강민정 • 박성준 • 윤미향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인류는 기후변화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며, 교육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.

현행법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교육의 시책을 명시하고 있는데,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교육이념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, 국가와

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·외의 변화하는 환경에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이상을 실현하는"을 "이상 실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"으로 한다.

제22조의2를 제22조의3으로 하고,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22조의2(기후변화환경교육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교육이념) 교육은 홍익인간	제2조(교육이념)
(弘益人間)의 이념 아래 모든	
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	
(陶冶)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	
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	
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	
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	
발전과 인류공영(人類共榮)의	
<u>이상을 실현하는</u> 데에 이바지	이상 실현 및 지속가능한 발전
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	을 이루는
<u><신 설></u>	제22조의2(기후변화환경교육) 국
	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
	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
	하여 생태환경교육을 받을 수
	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
	시하여야 한다.
제22조의2(학교체육) (생 략)	<u>제22조의3</u> (학교체육) (현행 제22
	조의2와 같음)